

1. 개정이유

환매목적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시 기준금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환매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(안 제4조제2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안

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환매 감정평가 : 환매 당시의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

부 칙

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감정평가수수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제1항의 감정평가액으로 본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4조(감정평가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환매 감정평가 : 환매 당시의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